

제 25 기

# 정기주주총회

일 시 : 2023년 03월 27일 (월) 오전 9시 30분

장 소 : 씨티센터타워 5층(LEARNING RM.1)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 씨티센터타워 5층)



**한일네트웍스**

# 목 차

I. 회순	1
II. 의안설명서	3
III. 감사보고서	5
1. 감사의 감사보고서	6
2.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7
IV. 영업보고서	13
1. 회사의 개황	14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19
3. 주요주주 현황	20
4. 모회사, 자회사 및 기업결합 사항 등	20
5. 최근 3년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21
6. 회사가 대처할 과제	23
7. 이사 및 감사 현황	24
8. 회사, 회사 및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24
9. 주요채권자 등	25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25
11.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25
V.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26
VI. 재무제표	28

# I. 회 순

# 회 순

## I. 개 회

## II. 출석주식수 보고

## III. 총회성립 선언

## IV. 회의목적사항

### 1.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 제 25 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보고
- 영업보고

### 2. 부의안건

- 제 1 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 제 2 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 3 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V. 폐 회

## **II. 의안설명서**

# 의안설명서

- 제 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안설명>

정관에 적용되어있던 상법의 상장사 특례조항을 상장폐지로 인하여 변경 및 삭제하고자 합니다.

♣ 첨부 정관 신규 대비표 참조

- 제 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안설명>

상법 제 388 조 및 정관 제 39 조에 의거, 제 26 기(2023 년도)의 이사보수한도를 승인받고자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이사회가 위임받고자 합니다.

- 제 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안설명>

상법 제 415 조 및 정관 제 51 조에 의거, 제 26 기(2023 년도)의 감사보수한도를 승인받고자 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이사회가 위임받고자 합니다.

## **Ⅲ. 감사보고서**

# 1. 감사의 감사보고서

본 감사는 제 25 기 사업연도(2022 년 1 월 1 일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의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1. 감사방법의 개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실사·입회·조회·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 2. 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 연결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관한 사항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 4. 영업보고서에 관한 사항

영업보고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3 년 3 월 27 일

한 일 네 트 워 크 스 주 식 회 사

상 근 감 사 류 승 범



## 2.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1) 연결기준

#### 한일네트웍스 주식회사

####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3년 3월 17일

####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한일네트웍스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연결재무제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성과 및 연결현금흐름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연결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기타사항

연결회사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연결재무제표는 타 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2년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연결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연결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연결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연결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 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연결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연결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연결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연결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정보 또는 그룹내의 사업감독과 관련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우리는 그룹감사의 지휘, 감독 및 수행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감사의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삼 정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김 교 태**

## 2) 별도기준

### 한일네트웍스 주식회사

####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23년 3월 17일

#### 감사의견

우리는 별첨된 한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기타사항

회사의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는 타감사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2년 3월 17일자 감사보고서에는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 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 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삼 정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김 교 태**

## **IV. 영업보고서**

## 1. 회사의 개황

### 1) 회사의 목적

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임대업에 관한 사업
2. 정보화 구축사업
3.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
4. 임대업 및 전대업
5. 네트워크 및 관련 시스템 매니지먼트사업
6. 인터넷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사업
7. 통신 및 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제조 및 판매 및 임대업과 관련 기술 용역업
8. 통신판매업
9. 정보시스템 컨설팅에 관한 사업
10. 정보처리 수탁관리에 관한 사업
11. 정보통신업무 제공에 관한 사업
12. 전기공사, 기계설비, 정보통신 공사 및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사업
13. 이동통신 시스템운영에 관한 사업
14. 유선방송 운영 및 프로그램 공급에 관한 사업
15. 교육훈련 서비스에 관한 사업
16. 사회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에 관한 사업
17.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에 관한 사업
18.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에 관한 사업
19. 국내외 무역 및 통관업
20. 광고 대행업 및 광고물 개발, 제작, 판매업
21. 인쇄 출판업 및 판매, 촉진사업
22. 센서부품 제조 및 자동제어 관련업
23. 사무자동화, 빌딩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업
24. 관광위락 및 요식업
25. 2차전지 판매사업
26. 항만운송사업, 항만시설 유지 관리업



27. 항공운송 주선업, 항공운송사업, 항공화물 운송대리점업, 상업서류송달업
28. 포장사업
29.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운송사업, 운송주선사업, 운송가맹사업), 자동차대여사업
30. 해상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주선업, 해운대리점업
31. 화물터미널사업, 복합운송 주선업
32. 주차장 운영업 등 운송관련 서비스업
33. 이사화물운송사업
34. 도매, 소매업(유통업)
35. 물류, 도매배송업
36. 위 각호에 관련한 부대사업 일체

## 2) 중요한 사업의 내용

### ○ SCC사업총괄

SCC사업총괄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영업 환경은, 물리적 업무 공간에 디지털기, 유무선 네트워크 등 첨단 IT기술과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등을 접목하여, 고객사 등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기반을 제공하는 토탈 컨택센터 서비스에서, 모바일 SNS 인공지능 챗봇, 비디오 등 멀티채널을 활용하는 옴니채널 컨택센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본격화된 비대면, 재택근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점차적으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컨택센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흐름에 대응하기 위하여 SCC사업총괄은 클라우드 기반의 SaaS, LaaS, PaaS 서비스에 챗봇 등 인공지능과 음성인식기술,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금융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외국계 회사가 ASP(Asset Service Provide) 서비스를 선호하였으나, 최근에는 외국계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 회사와 카드사, 홈쇼핑 등의 보험 대리점 등도 초기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의 급격한 변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설비를 자체 구축하는 대신 전문 기업의 ASP서비스를 도입하는 회사가 증가하고 있어 당사의 솔루션을 이용하려는 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CC사업총괄에서는 보험업계의 환경변화가 당사에 있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영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 SM사업부

SM사업부는 한일시멘트 그룹 계열사의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유지보수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유지보수 대상은 ERP, 그룹웨어, 인사시스템, 영업정보 시스템, 출하 자동화 시스템 등입니다.

2023년에는 '통합 ERP'프로젝트가 마무리될 예정이고, 한일시멘트 및 한일현대시멘트, 한일 산업에 '통합 ERP'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서비스를 기획하여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 IT사업총괄

IT사업총괄은 서버, 스토리지 등을 유통하는 SS팀과 국내외 보안 솔루션을 유통하는 Security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SS팀은 전 세계 No.1 컴퓨터 기업인 미국 Dell Technologies와 오랜 파트너 관계를 체결하여 제조업계, 보안업계, 국방,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고객을 대상으로 서버, 스토리지, 워크스테이션, 클라이언트 제품 등의 컨설팅·판매·구축 및 유지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IT시장의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적인 사업 지식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기존 IT 인프라 유통의 안정화 및 OEM 기반의 영업 강화로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Security사업부는 크게 외산 솔루션을 취급하는 GS(Global Solution)팀과 국내 솔루션을 취급하는 LS(Local Solution)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력 상품인 Fortinet, Piolink 제품을 기반으로 고객의 네트워크/보안 Needs에 대응할 수 있는 각 분야 선두 제품군들을 200여개의 국내 리셀링 파트너사를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장의 특성상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응하는 솔루션들이 계속하여 출시되고 있습니다. Security사업부에서는 새로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검토 검증하여 유통제품군을 확대하고 업계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최근 IT시장조사기관에서는 2022년 대비 2023년은 IT업계의 성장률을 6.6%로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Security사업부는 지금까지 축적된 사업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수요를 흡수하여 단순 솔루션 유통이 아닌 보안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보안전문 회사의 지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3) 사업장 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장 구분	주요 사업	소재지
본사	SCC사업, SM사업, IT사업	서울시 중구 수표로 34 씨티센터타워 10층
서교오피스	SCC사업(컨택센터사업), IT사업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8길 9 우리빌딩 3,4,5층
서초오피스	SM사업, IT사업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75 한일시멘트빌딩 3층

### 4) 임직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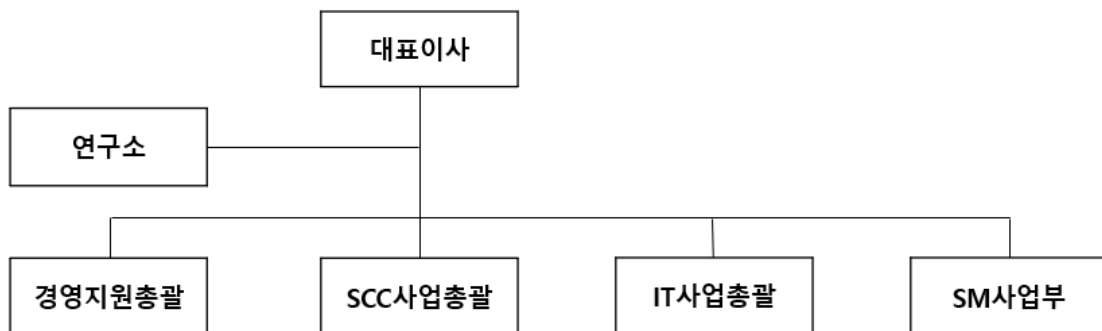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직원 수(명)						비고
	임원	관리사무직	연구/개발직	SE	영업직	합계	
남	9	20	15	85	17	146	-
여	0	12	5	17	2	36	-
합계	9	32	20	102	19	182	-

※ 계약직원 포함

### 5) 회사의 조직도

(2023년 3월 1일 기준)



## 6) 주식에 관한 사항

### 1. 발행한 주식의 종류와 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주식의 종류	주식수(주)	액면총액(원)	구성비(%)
기명식보통주	11,954,227	5,977,113,500	100
합계	11,954,227	5,977,113,500	100

### 2. 자본금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일자	증자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변동 자본금	변동 후 자본금
'98.08.26	법인설립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	5,000원	50,000	50,000
'99.08.03	유상증자		10,000주	5,000원	50,000	100,000
'00.01.11	유상증자		4,000주	5,000원	20,000	120,000
'00.01.29	무상증자		144,000주	5,000원	720,000	840,000
'00.02.19	유상증자		29,050주	5,000원	145,250	985,250
'00.02.29	무상증자		295,575주	5,000원	1,477,875	2,463,125
'00.04.14	유상증자		4,818주	5,000원	24,090	2,487,215
'00.06.04	액면분할		4,476,987주	500원	-	2,487,215
'06.01.18	상장공모		6,607,000주	500원	816,285	3,303,500
'07.06.27	유상증자		1,982,100주	500원	991,050	4,294,550
'08.03.20	유상증자		2,576,730주	500원	1,288,365	5,582,915
'13.01.02	합병증자		788,397주	500원	394,199	5,977,114

### 3. 주식사무

결산일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개최	결산일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식업무 대행기관	한국예탁결제원
공고방법	당사 홈페이지(www.hanilnetworks.com)

## 7) 사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

### 1) 영업의 개황

2022년도는 우리 한일네트웍스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내부적인 변화로는 5월 유베이스로의 최대주주 변경, 7월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상장유지비용 절감 등을 위한 자진 상장폐지 결정, 그리고 10월 상장 폐지 완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성장을 위한 내적 변화와는 달리, 2022년 보험 업계의 최대 이슈인 보험수수로 1,200% 지급 제한이라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행되는 등 외부 환경은 당사에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임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회사는 어려운 상황을 잘 버틸 수 있었고, 이사회에서 승인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연결기준 매출 약 1,194억 원, 영업이익은 약 39억 원, 당기순이익은 약 8억 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올해 보험연구기관 KIRI보험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23년에도 인플레이션 확대로 인하여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둔화 추세 또한, 2023년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보험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장기 성장 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회사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반면, 다행스럽게도 IT 시장조사기관 KRG에 따르면 2023년도의 IT투자수요는 2022년 대비 6.6% 증가라는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업무프로세스 디지털화에 대한 수요 증대로 IT투자 움직임 또한 가속화될 것이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 먹통 사태를 겪은 기업 등에서 시스템 보안을 위한 IT 지출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단순 솔루션 유통이 아닌 보안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보안전문 회사의 지위를 확립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큰 난관 및 변화에서도 전 임직원이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였으며, 앞으로도 한일네트웍스 임직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주주님들의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사업유형별 매출 실적

(단위 : 천원)

매출유형	품 목	제25기	제24기	제23기
서비스매출	유지보수 외	67,457,142	77,586,323	73,063,660
상품매출	네트워크 장비 외	51,971,155	50,760,564	44,362,968
합 계		119,428,297	128,346,887	117,426,628

3) 주요설비 신설 및 확장과 자금조달 상황

(단위 : 천원)

조 달 원 천	기초잔액	신규조달	상환등감소	기말잔액
은 행	5,000,000	-	-	5,000,000
기 타	-	-	-	-
총 계	5,000,000	-	-	5,000,000

3. 주요주주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성명(법인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주식회사 유베이스	10,960,430주	91.69%	매출 등	

※ 5%이상 보유 주주

4. 모회사, 자회사 및 기업결합 사항 등

1) 모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2022년 12월 31일 기준)

모회사				당사와의 관계		거래 관계
회사명	소재지	자본금	주요업종	소유 주식수	소유 비율	
주식회사 유베이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38길 37(용산동5가)	26,158	서비스	10,960,430주	91.69%	매출 등

※ 특수관계인 포함

## 2) 자회사 현황

(단위 : 백만원)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자회사				당사와의 관계		거래 관계
회사명	소재지	자본금	주요업종	소유 주식수	소유 비율	
에프앤센터 주식회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7 한일시멘트빌딩	50	소프트웨 어개발업	10,000주	100.00%	도급 계약

## 3) 모·자 회사에 대한 임원 겸직상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겸직임원		겸직회사	
성명	직위	회사명	직위
송기홍	대표이사	유베이스	대표이사
이민규	전무	유베이스	전무
이진선	상무	에프앤센터(주)	대표이사

## 5. 최근 3년간 영업실적 및 재산상태

### 1) 영업실적 (연결기준)

(단위 : 원)

과목	제25기	제 24 기	제 23 기
	(2022.01.01~2022.12.31)	(2021.01.01~2021.12.31)	(2020.01.01~2020.12.31)
1. 매출액	119,428,296,516	128,347,997,984	117,435,554,382
2. 매출원가	105,074,923,622	109,621,047,568	101,326,599,471
3. 매출총이익	14,353,372,894	18,726,950,416	16,108,954,911
4. 판매비와관리비	10,435,012,507	5,715,057,467	6,101,427,795
5. 영업이익	3,918,360,387	13,011,892,949	10,007,527,116
6. 금융수익	492,025,988	381,177,314	519,403,777
7. 금융비용	1,554,267,972	666,119,063	1,037,907,724
8. 기타수익	1,055,939,094	494,796,901	616,925,353
9. 기타비용	1,548,687,586	1,311,322,631	326,885,788
1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363,369,911	11,910,425,470	9,779,062,734

11. 법인세비용	1,525,321,871	2,599,287,881	2,177,114,707
12. 당기순이익	838,048,040	9,311,137,589	7,601,948,027

## 2) 영업실적 (별도기준)

(단위 : 원)

과 목	제25기	제 24 기	제 23 기
	(2022.01.01~2022.12.31)	(2021.01.01~2021.12.31)	(2020.01.01~2020.12.31)
1. 매출액	119,428,296,516	128,346,887,201	117,426,628,132
2. 매출원가	105,376,494,738	109,931,816,575	101,737,526,789
3. 매출총이익	14,051,801,778	18,415,070,626	15,689,101,343
4. 판매비와관리비	10,177,750,998	5,483,562,210	5,816,689,977
5. 영업이익	3,874,050,780	12,931,508,416	9,872,411,366
6. 금융수익	487,704,129	380,044,905	520,225,693
7. 금융비용	1,554,267,972	666,119,063	1,037,907,724
8. 기타수익	1,055,898,104	462,711,499	616,889,292
9. 기타비용	1,547,783,320	1,311,322,627	326,885,788
10. 법인세차감전순이익	2,315,601,721	11,796,823,130	9,644,732,839
11. 법인세비용	1,522,392,151	2,601,536,575	2,166,468,961
12. 당기순이익	793,209,570	9,195,286,555	7,478,263,878

## 3) 재산상태 (연결기준)

(단위 : 원)

과 목	제25기 기말	제24기 기말	제 23 기 기말
	(2022.12.31현재)	(2021.12.31현재)	(2020.12.31현재)
< 자 산 >			
1. 유동자산	63,149,855,673	49,713,322,889	45,524,276,251
2. 비유동자산	56,785,613,227	83,055,491,334	90,352,856,386
자 산 총 계	119,935,468,900	132,768,814,223	135,877,132,637
< 부 채 >			
1. 유동부채	32,979,778,209	38,645,691,726	37,229,163,096
2. 비유동부채	10,711,277,840	13,820,351,763	22,039,998,199
부 채 총 계	43,691,056,049	52,466,043,489	59,269,161,295
< 자 본 >			
1.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6,244,412,851	80,302,770,734	76,607,971,342



1) 자본금	5,977,113,500	5,977,113,500	5,977,113,500
2) 기타불입자본	16,885,877,128	17,082,430,128	22,813,395,068
3) 기타자본구성요소	2,537,386,250	8,087,734,457	5,097,637,997
4) 이익잉여금	50,844,035,973	49,155,492,649	42,719,824,777
2. 비지배기업소유주지분		-	-
자 본 총 계	76,244,412,851	80,302,770,734	76,607,971,342
부채와 자본총계	119,935,468,900	132,768,814,223	135,877,132,637

#### 4) 재산상태 (별도기준)

(단위 : 원)

과 목	제25기 기말 (2022.12.31현재)	제24기 기말 (2021.12.31현재)	제 23 기 기말 (2020.12.31현재)
<b>&lt; 자 산 &gt;</b>			
1. 유동자산	62,850,143,798	49,457,722,606	45,382,402,330
2. 비유동자산	56,778,372,589	83,044,087,783	90,340,990,795
자 산 총 계	119,628,516,387	132,501,810,389	135,723,393,125
<b>&lt; 부 채 &gt;</b>			
1. 유동부채	32,950,604,608	38,620,390,838	37,191,979,260
2. 비유동부채	10,642,487,381	13,725,051,990	21,943,512,010
부 채 총 계	43,593,091,989	52,345,442,828	59,135,491,270
<b>&lt; 자 본 &gt;</b>			
1. 자본금	5,977,113,500	5,977,113,500	5,977,113,500
2. 기타불입자본	16,885,877,128	17,082,430,128	22,813,395,068
3. 기타자본구성요소	2,537,386,250	8,087,734,457	5,097,637,997
4. 이익잉여금	50,635,047,520	49,009,089,476	42,699,755,290
자 본 총 계	76,035,424,398	80,156,367,561	76,587,901,855
부채와 자본총계	119,628,516,387	132,501,810,389	135,723,393,125

#### 6. 회사가 대처할 과제

- "2. 영업의 경과 및 성과"의 1) 영업의 개황 (본 자료 P.19) 참조

## 7. 이사 및 감사 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구 분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또는 주된 직무	회사와의 거래관계	비고
상 근	송 기 흥	대표이사	총 괄	없 음	등기
"	이 민 규	전 무	사 내 이 사	"	"
비상근	나 해 인	사외이사	경 영 자 문	"	"
상 근	류 승 범	감 사	감 사	"	"

## 8. 회사, 회사 및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타회사 명칭	투자 및 출자회사 (당사 또는 자회사)	타회사에 출자한		당사에 출자한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에프앤센터(주)	한일네트웍스(주)	10,000주	100.00%	-	-
한국단지(주)	한일네트웍스(주)	312,450주	3.00%	-	-
코모텍	한일네트웍스(주)	9,375주	1.27%		
후이즈글로벌 네트워크	한일네트웍스(주)	25,428주	0.50%	-	-
한국경제신문	한일네트웍스(주)	2,128주	0.01%	-	-
인터베스트 신성장투자조합	한일네트웍스(주)	54.66좌	2.00%	-	-
한국씨씨에스	한일네트웍스(주)	147주	0.20%	-	-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한일네트웍스(주)	32좌	0.00%	-	-
(주)유베이스	한일네트웍스(주)			10,960,430 주	91.69%

## 9. 주요채권자 등

(2022년 12월 31일 기준)

성명(법인명)	채권액(원)	채권자보유당사주식수	비고
(주)파이오링크	5,445,309,870	-	-
한국산업은행	5,009,472,603	-	-
Fortinet	2,965,963,426	-	-

## 10. 결산기 후에 생긴 중요한 사실

- 해당사항없음.

## 11. 기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 **V.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한일네트웍스 주식회사 주주, 이사회 및 감사 귀중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 동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은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재무제표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오류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 평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제5장(중소기업에 대한 적용)'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에 근거하여 볼 때,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이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내용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되거나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충분한 주의를 다하여 보고 내용의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 검토하였습니다.

2023년 1월 30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 송기홍

## **VI. 재무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25기 2022.12.31 현재

제24기 2021.12.31 현재

(단위: 원)

과 목	제 25 기말	제 24 기말
자 산		
유동자산	63,149,855,673	49,713,322,889
현금및현금성자산	10,644,447,882	13,871,727,685
단기금융자산	1,513,133,970	6,422,142,650
매출채권	34,673,626,606	18,577,540,531
기타채권	83,464,762	149,256,669
재고자산	13,387,498,689	8,698,975,458
기타유동자산	2,365,382,784	1,993,679,896
당기법인세자산	482,300,980	-
비유동자산	56,785,613,227	83,055,491,334
장기금융상품	50,000,000	50,000,000
장기매출채권	1,033,101,324	-
유형자산	24,228,439,142	38,236,423,834
무형자산	247,618,846	266,517,877
기타금융자산	27,788,667,532	43,996,752,912
이연법인세자산	498,459,554	296,606,149
기타비유동자산	2,218,458,966	209,190,562
순확정급여자산	720,867,863	-
자 산 총 계	119,935,468,900	132,768,814,223
부 채		
유동부채	32,979,778,209	38,645,691,726
매입채무	12,981,172,382	10,901,499,764
기타채무	2,584,511,629	3,702,165,006
유동성장기차입금	-	5,000,000,000
당기법인세부채	1,455,713	951,160,210
기타유동부채	4,516,363,955	3,353,178,892
리스부채(유동)	10,855,681,213	14,737,687,854

과 목	제 25 기말	제 24 기말
충당부채(유동)	2,040,593,317	-
비유동부채	10,711,277,840	13,820,351,763
장기차입금	5,000,000,000	-
순확정급여부채	67,195,527	578,178,603
기타비유동부채	259,951,753	341,944,920
리스부채	4,903,521,880	12,900,228,240
충당부채	480,608,680	-
부 채 총 계	43,691,056,049	52,466,043,489
자 본		
지배기업소유주지분	76,244,412,851	80,302,770,734
자본금	5,977,113,500	5,977,113,500
기타불입자본	16,885,877,128	17,082,430,128
기타자본구성요소	2,537,386,250	8,087,734,457
이익잉여금	50,844,035,973	49,155,492,649
비지배지분	-	-
자 본 총 계	76,244,412,851	80,302,770,73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9,935,468,900	132,768,814,223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매출액	119,428,296,516	128,347,997,984
매출원가	105,074,923,622	109,621,047,568
매출총이익	14,353,372,894	18,726,950,416
판매비와관리비	10,435,012,507	5,715,057,467
영업이익	3,918,360,387	13,011,892,949
금융수익	492,025,988	381,177,314
금융비용	1,554,267,972	666,119,063
기타수익	1,055,939,094	494,796,901
기타비용	1,548,687,586	1,311,322,63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63,369,911	11,910,425,470
법인세비용	1,525,321,871	2,599,287,881
당기순이익	838,048,040	9,311,137,589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4,699,852,923)	2,983,641,22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4,699,852,923)	2,983,641,22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43,583,284	(6,455,2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4,743,436,207)	2,990,096,460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 되는 항목		
총포괄이익(손실)	(3,861,804,883)	12,294,778,812
당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838,048,040	9,311,137,589
비지배지분	-	-
총포괄이익(손실)의 귀속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861,804,883)	12,294,778,812
비지배지분	-	-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	75	785

**<연결 자본변동표>**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원)

과 목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 지배 지분	자본 합계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 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지배기업의 소 유주에게 귀속 되는 자본 합계		
2021.01.01 (기초자본)	5,977,113,500	22,813,395,068	5,097,637,997	42,719,824,777	76,607,971,342	-	76,607,971,342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9,311,137,589	9,311,137,589	-	9,311,137,589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	-	2,990,096,460	-	2,990,096,460	-	2,990,096,46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6,455,237)	(6,455,237)	-	(6,455,237)
총포괄이익 소계	-	-	2,990,096,460	9,304,682,352	12,294,778,812	-	12,294,778,812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	(2,869,014,480)	(2,869,014,480)	-	(2,869,014,480)
자기주식의 취득	-	(5,730,964,940)	-	-	(5,730,964,940)	-	(5,730,964,94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소계	-	(5,730,964,940)	-	(2,869,014,480)	(8,599,979,420)	-	(8,599,979,420)
2021.12.31 (기말자본)	5,977,113,500	17,082,430,128	8,087,734,457	49,155,492,649	80,302,770,734	-	80,302,770,734
2022.01.01 (기초자본)	5,977,113,500	17,082,430,128	8,087,734,457	49,155,492,649	80,302,770,734	-	80,302,770,734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838,048,040	838,048,040	-	838,048,040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	-	(4,743,436,207)	-	(4,743,436,207)	-	(4,743,436,20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43,583,284	43,583,284	-	43,583,284
총포괄이익 소계	-	-	(4,743,436,207)	881,631,324	(3,861,804,883)	-	(3,861,804,883)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자기주식의 취득	-	(196,553,000)	-	-	(196,553,000)	-	(196,553,000)
기타:							
기타포괄손익-	-	-	(806,912,000)	806,912,000	-	-	-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대체							
2022.12.31 (기말자본)	5,977,113,500	16,885,877,128	2,537,386,250	50,844,035,973	76,244,412,851	-	76,244,412,851

**<연결 현금흐름표>**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101,315,775	38,619,489,017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6,881,383,102	40,522,162,264
이자수취	285,565,289	140,632,634
이자지급	(764,091,804)	(118,160,256)
배당금수취	277,921,400	290,020,029
법인세납부	(1,579,462,212)	(2,215,165,654)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832,654,456	(2,981,052,16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15,076,773,658	21,183,444,934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5,112,142,650	6,122,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12,060,236,23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7,367,012,0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2,527,899,008	2,991,266,900
유형자산의 처분	69,720,000	8,941,8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3,244,119,202)	(24,164,497,097)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203,133,970)	(11,136,142,6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6,000,0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910,983,803)	(1,857,453,000)
유형자산의 취득	(2,067,175,429)	(5,162,934,247)
무형자산의 취득	(62,826,000)	(7,967,2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61,250,034)	(34,659,071,34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20,161,250,034)	(34,659,071,343)
리스부채의 상환	(19,871,018,454)	(21,059,091,923)
배당금의 지급	-	(2,869,014,480)
단기차입금의 상환	-	(5,000,000,000)
자기주식의 취득	(290,231,580)	(5,730,964,94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19,60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3,227,279,803)	979,685,118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3,871,727,685	12,892,042,567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0,644,447,882	13,871,727,685

**<재무상태표>**

제25기 2022.12.31 현재

제24기 2021.12.31 현재

(단위: 원)

과 목	제 25 기말	제 24 기말
자 산		
유동자산	62,850,143,798	49,457,722,606
현금및현금성자산	10,560,765,368	13,740,404,937
단기금융자산	1,300,000,000	6,300,000,000
매출채권	34,673,626,606	18,577,540,531
기타채권	81,285,332	148,269,371
재고자산	13,387,498,689	8,698,975,458
기타유동자산	2,364,666,823	1,992,532,309
당기법인세자산	482,300,980	-
비유동자산	56,778,372,589	83,044,087,783
장기금융상품	50,000,000	50,000,000
장기매출채권	1,033,101,324	-
유형자산	24,228,439,142	38,236,423,834
무형자산	247,618,846	266,517,877
기타금융자산	27,788,667,532	43,996,752,912
이연법인세자산	491,218,916	285,202,598
기타비유동자산	2,218,458,966	209,190,562
순확정급여자산	720,867,863	-
자 산 총 계	119,628,516,387	132,501,810,389
부 채		
유동부채	32,950,604,608	38,620,390,838
매입채무	12,981,172,382	10,901,499,764
기타채무	2,565,981,228	3,681,246,646
유동성장기차입금	-	5,000,000,000
당기법인세부채	-	948,705,989
기타유동부채	4,507,176,468	3,351,250,585

과 목	제 25 기말	제 24 기말
리스부채(유동)	10,855,681,213	14,737,687,854
충당부채(유동)	2,040,593,317	-
비유동부채	10,642,487,381	13,725,051,990
장기차입금	5,000,000,000	-
순확정급여부채	-	485,081,595
기타비유동부채	258,356,821	339,742,155
리스부채	4,903,521,880	12,900,228,240
충당부채	480,608,680	-
부 채 총 계	43,593,091,989	52,345,442,828
자 본		
자본금	5,977,113,500	5,977,113,500
기타불입자본	16,885,877,128	17,082,430,128
기타자본구성요소	2,537,386,250	8,087,734,457
이익잉여금	50,635,047,520	49,009,089,476
자 본 총 계	76,035,424,398	80,156,367,56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9,628,516,387	132,501,810,389

**<포괄손익계산서>**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매출액	119,428,296,516	128,346,887,201
매출원가	105,376,494,738	109,931,816,575
매출총이익	14,051,801,778	18,415,070,626
판매비와관리비	10,177,750,998	5,483,562,210
영업이익	3,874,050,780	12,931,508,416
금융수익	487,704,129	380,044,905
금융비용	1,554,267,972	666,119,063
기타수익	1,055,898,104	462,711,499
기타비용	1,547,783,320	1,311,322,6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315,601,721	11,796,823,130
법인세비용	1,522,392,151	2,601,536,575
당기순이익	793,209,570	9,195,286,555
법인세차감후기타포괄손익	(4,717,599,733)	2,973,158,571
후속적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4,717,599,733)	2,973,158,571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5,836,474	(16,937,8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 익	(4,743,436,207)	2,990,096,460
총포괄이익(손실)	(3,924,390,163)	12,168,445,126
주당손익		
기본주당이익	71	775

**<자본변동표>**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2021.01.01 (기초자본)	5,977,113,500	22,813,395,068	5,097,637,997	42,699,755,290	76,587,901,855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9,195,286,555	9,195,286,55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	-	2,990,096,460	-	2,990,096,46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16,937,889)	(16,937,889)
총포괄이익 소계	-	-	2,990,096,460	9,178,348,666	12,168,445,126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등:					
연차배당	-	-	-	(2,869,014,480)	(2,869,014,480)
자기주식의 취득	-	(5,730,964,940)	-	-	(5,730,964,940)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등 소계	-	(5,730,964,940)	-	(2,869,014,480)	(8,599,979,420)
2021.12.31 (기말자본)	5,977,113,500	17,082,430,128	8,087,734,457	49,009,089,476	80,156,367,561
2022.01.01 (기초자본)	5,977,113,500	17,082,430,128	8,087,734,457	49,009,089,476	80,156,367,561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793,209,570	793,209,57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	-	(4,743,436,207)	-	(4,743,436,207)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5,836,474	25,836,474
총포괄이익 소계	-	-	(4,743,436,207)	819,046,044	(3,924,390,163)
자본에 직접 반영된 주주와의 거래 등:					
자기주식의 취득	-	(196,553,000)	-	-	(196,553,000)
기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처분으로 인한 대체	-	-	(806,912,000)	806,912,000	-
2022.12.31 (기말자본)	5,977,113,500	16,885,877,128	2,537,386,250	50,635,047,520	76,035,424,398



**< 현금흐름표 >**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057,964,689	38,506,227,76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6,839,438,279	40,407,326,128
이자수취	282,368,802	140,164,718
이자지급	(764,091,804)	(118,160,256)
배당금수취	277,921,400	290,020,029
법인세납부	(1,577,671,988)	(2,213,122,858)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923,645,776	(2,956,909,513)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14,964,631,008	21,071,444,934
단기금융자산의 감소	5,000,000,000	6,01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	1,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	12,060,236,23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감소	7,367,012,000	-
임차보증금의 감소	2,527,899,008	2,991,266,900
유형자산의 처분	69,720,000	8,941,80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3,040,985,232)	(24,028,354,447)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	(11,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증가	-	(6,000,000,000)
임차보증금의 증가	(910,983,803)	(1,857,453,000)
유형자산의 취득	(2,067,175,429)	(5,162,934,247)
무형자산의 취득	(62,826,000)	(7,967,20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161,250,034)	(34,659,071,34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	-	-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	(20,161,250,034)	(34,659,071,343)
리스부채의 상환	(19,871,018,454)	(21,059,091,923)
배당금의 지급	-	(2,869,014,480)
단기차입금의 상환	-	(5,000,000,000)
자기주식의 취득	(290,231,580)	(5,730,964,940)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319,607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3,179,639,569)	890,566,512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3,740,404,937	12,849,838,425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0,560,765,368	13,740,404,93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 25 기 2022.01.01 부터 2022.12.31 까지

제 24 기 2021.01.01 부터 2021.12.31 까지

(단위: 원)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725,301,520	9,199,343,476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99,343,476	20,994,81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5,836,474	(16,937,8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처분	806,912,000	-
당기순이익	793,209,570	9,195,286,555
이익잉여금처분액	-	(9,100,000,000)
임의적립금적립액	-	(9,100,000,0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725,301,520	99,343,476

[첨부]

정 관 신 구 대 비 표

개정 前	개정 後	비 고
<p><b>제 10 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b></p> <p>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p> <p>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2.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3. 발행주식 총수의 <u>100 분의 50</u>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p> <p>② 1 항 제 3 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p> <p>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 등에 따라 신주를 모집, 매출 또는 입찰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p> <p>2.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p> <p>3.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 하는 방식</p> <p>4.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5.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b>제 10 조(신주인수권)</b></p> <p>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지며, 신주발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p> <p>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p> <p>1.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3.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4. <u>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u></p> <p>5. 전략적 제휴나 재무구조의 개선,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내국인 및 국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6.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7.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발행하는 경우</p> <p>8. <u>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u>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 상장회사 특례조항 삭제</p> <p>- 외국인투자 관련 조항 추가</p> <p>- 우리사주 관련 참조조항 변경</p>

<p>6.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7. <u>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 조의 2 의</u>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9 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p> <p>④ 제 1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p> <p>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주식 발생 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p> <p>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p> <p>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③ 제 2 항의 1 호 내지 6 호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p> <p>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p>	
<p><b>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b></p> <p>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u>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u> 내에서 상법 제 542 조의 3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상법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서</p>	<p><b>제 11 조 (주식매수선택권)</b></p> <p>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u>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의 범위</u>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로 부여할 수 있다</p> <p>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 에</p>	<p>- 상장회사 특례조항 삭제</p>

<p>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p> <p>2.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6 호의 주요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함)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 포함)는 제외한다.</p> <p>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p> <p>③ (생략)</p> <p>④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u>100 분의 5</u> 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새로이 <u>주식</u>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p> <p>가. <u>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76 조의 7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u></p> <p>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p> <p>2. 제 1 호 이외의 경우에는 <u>제 1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u></p> <p>⑥ (생략)</p> <p>⑦ 회사는 <u>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한</u></p>	<p>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p>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p> <p>2.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p> <p>3. 제 1 호와 제 2 호에 규정된 자와 직계·존비속</p> <p>③ (좌동)</p> <p>④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u>100 분의 10</u> 를 초과할 수 없다.</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의 액면분할 및 병합, 합병 등의 경우 행사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p> <p>1. <u>신주</u>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p> <p>가. <u>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당해 주식의 실질가액</u></p> <p>나. (좌동)</p> <p>2. 자기의 <u>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u></p> <p>⑥ (좌동)</p> <p>⑦ (삭제)</p>	
--	---	--

<p><u>방법으로 부여한다.</u></p> <p>1. <u>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u></p> <p>2. <u>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u></p> <p>3. <u>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u></p> <p>⑧ ~ ⑨ (생략)</p>	<p>⑦ ~ ⑧ (좌동)</p>	
<p><b>제 12 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b></p> <p>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u>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u>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 ③ (생략)</p> <p>④ <u>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 11 조의 2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 분의 80 이상으로 한다.</u>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p> <p>⑤ ~ ⑥ (생략)</p>	<p><b>제 12 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b></p> <p>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u>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u>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② ~ ③ (좌동)</p> <p>④ <u>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14 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으로 한다.</u>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p> <p>⑤ ~ ⑥ (좌동)</p>	<p>- 참조조항 변경 및 행사가격의 법령한도 적용</p>
<p><b>제 17 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b></p> <p>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p>	<p><b>제 17 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b></p> <p>① 이 회사는 전환사채의 액면총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과 합하여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p> <p>2. <u>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 외국인투자 관련 조항 추가</p>

<p>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p> <p>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p> <p>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③ (생략)</p> <p>④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무기명식</u>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⑤ <u>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공모의 경우 1 월, 사모는 1 년이 경과한 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u>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p> <p>⑦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전환사채 부여시의 전환가격의 100 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p>	<p>② (좌동)</p> <p>③ <u>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 우선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u></p> <p>④ <u>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u> <u>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u>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p>	
<p><b>제 18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b></p> <p>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0 조 제 1 항 제 1 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b>제 18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b></p> <p>① 이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이 전환사채의 액면총액과 합하여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p> <p>1. 신주인수권부채를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p> <p>2.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 <u>외국인 및 외국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u></p>	<p>- 외국인투자 관련 조항 추가</p>

<p>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0 조 제 1 항 1 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p> <p>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p> <p>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p> <p>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 후 공모의 경우 1 월, 사모는 1 년이 경과한 후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⑥ 회사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한도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부여시의 신주인수권 행사가가격의 100 분의 70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p>	<p>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p> <p>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이 50 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의결권 우선주식 또는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p> <p>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 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3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	--	--



<p><b>제 24 조(소집통지 및 공고)</b></p> <p>① (생략)</p> <p>② <u>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u></p> <p>③ <u>회사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의 성명·약력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u></p> <p>④ <u>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의 경영참고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증권업협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u></p>	<p><b>제 24 조(소집통지 및 공고)</b></p> <p>① (좌동)</p> <p>② <u>주주총회 소집통지 대상은 1주 이상을 소유한 모든 주주로 한다. 단,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3년간 계속 도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u></p> <p>③ (삭제)</p> <p>④ (삭제)</p>	<p>- 상장회사 특례조항 삭제</p>
<p><b>제34조(이사의 수)</b></p> <p>① <u>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u></p> <p>② <u>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u></p>	<p><b>제34조(이사의 수)</b></p> <p>① <u>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u></p> <p>② (삭제)</p>	<p>- 상장회사 특례조항 삭제</p>
<p><b>제55조(이익금의 처분)</b></p> <p>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익준비금</li> <li>2. 기타의 법정준비금</li> <li>3. 배당금</li> <li>4. 임의적립금</li> <li>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li> </ol>	<p><b>제55조(이익금의 처분)</b></p> <p>이 회사는 매 사업연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익준비금</li> <li>2. 기타의 법정준비금</li> <li>3. 배당금</li> <li>4. 임의적립금</li> <li>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li> </ol>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문구 추가
<p><b>제56조의2(분기배당)</b></p> <p>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 3 (생략)</p> <p>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p> <p>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p> <p>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p> <p>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p> <p>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p>	<p><b>제56조의2(중간배당)</b></p> <p>① 이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 주식 또는 그 외의 재산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지급은 이사회 결의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 3 (좌동)</p> <p>4.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p> <p>5.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p> <p>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p> <p>7. (삭제)</p> <p>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1 항의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제 1 항의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 상장회사 특례조항 삭제</p>